

##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06. 5.

발 의 자 : 신봉현 위원 외 1

### 1. 제안이유

지방의회 유급제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2005.8.4 법률제7670호) 및 동법 시행령(2006.2.8 대통령령제19322호)의 개정으로 종전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새로 신설된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동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 내에서 우리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기준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함.(안 제3조제1항)
- 나. 월정수당은 월 2,052,500원로 함.(안 제3조제2항)
- 다. 월정수당은 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안 제3조제3항)
- 라. 국내여행을 할 때 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중 숙박비와 식비 지급기준을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춰 현실화함.(안 별표1)

### 3. 개정근거

- 가. 지방자치법(2005.8.4 법률제7670호)제32조
-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2006.2.8 대통령령제19322호)제15조

### 4. 개정조례(안) : 별첨

###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 6. 기타사항 : 2006년 5월 1일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월 2,052,500원으로 결정함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제 호

##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월정수당) ①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월정수당은 월 2,052,500원으로 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월정수당은 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제1항중 “일비”를 “천지교통비”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

## [별표 1]

##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제6조 제1항 관련)

(단위:원)

구분 \ 지급 기준액	철 도 노 선	선 박 임	항 공 임	자 동 차 임	현 지 교 통 비 (1일당)	숙 박 비 (1일당)	식 비 (1일당)
의 원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10,000	46,000	25,000

비고 : 1.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서울특별시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국내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u></p>	<p><u>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동법 시행령-----</p>
<p>제3조(회기수당) ①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 중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매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p> <p>②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100,000원으로 한다.</p> <p>③회기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p>	<p>제3조(월정수당) ①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p> <p>②월정수당은 월 2,052,500원으로 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p> <p>③월정수당은 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p>
<p>제5조(여비의 종류) ①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u>일비</u>,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p> <p>②(생략)</p>	<p>제5조(여비의 종류) ①-----</p> <p>-----현지교통비,-----</p> <p>②(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6조 제1항 관련) (단위: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철도 운임</th> <th>선박 운임</th> <th>항공 운임</th> <th>자동차 운임</th> <th>일비 (1인당)</th> <th>숙박비 (10일당)</th> <th>식비 (1일당)</th> </tr> </thead> <tbody> <tr> <td>의정위원</td> <td>1등급</td> <td>2등급액</td> <td>정액</td> <td>정액</td> <td>10,000</td> <td>46,000</td> <td>25,000</td> </tr> <tr> <td>의원</td> <td>2등급</td> <td>2등급액</td> <td>정액</td> <td>정액</td> <td>10,000</td> <td>25,000</td> <td>18,000</td> </tr> </tbody> </table>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인당)	숙박비 (10일당)	식비 (1일당)	의정위원	1등급	2등급액	정액	정액	10,000	46,000	25,000	의원	2등급	2등급액	정액	정액	10,000	25,000	18,000	<p>[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6조 제1항 관련) (단위: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철도 운임</th> <th>선박 운임</th> <th>항공 운임</th> <th>자동차 운임</th> <th>현지 교통비 (1일당)</th> <th>숙박비 (1일당)</th> <th>식비 (1일당)</th> </tr> </thead> <tbody> <tr> <td>의원</td> <td>1등급</td> <td>2등급액</td> <td>정액</td> <td>정액</td> <td>10,000</td> <td>46,000</td> <td>25,000</td> </tr> </tbody> </table>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의원	1등급	2등급액	정액	정액	10,000	46,000	25,000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인당)	숙박비 (10일당)	식비 (1일당)																																																
의정위원	1등급	2등급액	정액	정액	10,000	46,000	25,000																																																
의원	2등급	2등급액	정액	정액	10,000	25,000	18,000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의원	1등급	2등급액	정액	정액	10,000	46,000	25,000																																																
<p>비고 : 1.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여행(서울특별시내에서의 여행을 말한다)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음, 4시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5천원을 지급한다.</p> <p>2.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p> <p>3.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국내여비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비고 : 1.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서울특별시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p> <p>2.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p> <p>3.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국내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p>																																															